

적극행정

과제명	감사원과 함께한 40억 원의 예산절감
제출부서	수도부문 수도개발처
팀원	(리더) 박규영 부장 (팀원) 고현수 차장, 김재현 대리

<p>추진 배경</p>	<p>◇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준공처리를 둘러싼 주요 이슈</p> <p>① 법률, 판례, 법령해석에 반하는 행정기준을 따를 것인가? ② 비용, 시간,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소송으로 해결할 것인가? ③ 타 공익사업(도시, 주택 등)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것인가?</p> <p>□ (잘못된 행정기준) 법률로 정한 무상귀속 대상시설을 행정부 내부 기준 강화 및 소송 편의주의를 근거로 유상 매입 요청(경기도)</p> <p>* 조달청 :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제정('18.5.29) 및 개정 →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은 형식적 및 실질적 요건 모두 충족 필요</p> <p>○ 관련 법률, 판례, 법령해석, 타 댐 사례 등을 근거로 전 필지 (349필지, 105천㎡)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경기도와 의견 대립</p> <p>* 판례, 법제처 유권해석 : 실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무상귀속 대상</p> <p>☞ 문제가 있는 정부 업무기준을 수용할 경우의 무기력감 극복</p> <p>□ (예산낭비 초래) 유상취득 시 국가 예산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</p> <p>○ 경기도 주장 수용 시 약 55억 원의 토지매입비 소요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한 토지매입비 환수가 불가피(LH 등 타 공익사업자도 소송으로 해결 중)</p> <p>☞ 국가 재정손실 방지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필요</p> <p>□ (시급한 사업준공) 사업 미준공*으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 (년 11억) 불가로 댐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함</p> <p>* 댐 공사착수('07.2), 대체도로 공사 완료('16.12), 무상귀속 협의('17.10~)</p> <p>☞ 공익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와 안정된 사업 여건 확보</p>
<p>추진 내용</p>	<p>◇ 전방위적인 해결방안 모색 및 사내 관련 부서 협업!</p> <p>① (사전 컨설팅) 감사원의 구속력 있는 처분을 통해 문제해결 도모</p> <p>② 환경부(협의), 법제처(질의회신), 법무공단(판례 검토), 전사협의 등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과 관계기관의 공식의견 청취로 신뢰도 확보</p>

	<p>□ (내부 협업) 감사실, 법무실, 수자원시설처, 한강경영처, 연천포천권지사 등과 협업을 통해 관련자료의 신속한 확보 및 대응논리 개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장 : 기존 도로의 과거 사진, 도로 공용개시 근거자료 확보 ○ 본사 : 감사원 제출 논리 및 경기도 대응 논리 개발 <p>□ (사전 컨설팅) 구속력을 가진 독립된 제3의 기관을 통한 해결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에 요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사관 현장(연천, 포천) 방문 요청 및 댐 현장 조사(2명, 5.1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감사원 방문 설명(2회/5.10, 5.25), 관련 판례, 고시자료 등 제공 ○ 관계기관 의견청취를 통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초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업시행자의 자격(K-water)으로 공식의견을 듣는 것이 불가능한 기획재정부, 조달청, 법제처, 경기도청의 공식의견을 감사원을 통해 청취 ○ 사전컨설팅 전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파트너십 유지 및 소통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경기도 요구자료에 대한 신속한 제공 및 사전컨설팅 신청 취지 설명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[사전컨설팅 효과] 사실상 해당기관을 구속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→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제10조</p> </div> <p>□ (관계기관 협업)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시너지 창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환경부) 유상취득 시 예산 확보 및 사업기간 연장 협의(3.16) ○ (법제처) 법령해석 최종기관으로서 통일된 법령 해석 요청(3.2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환경부를 통한 법령해석 요청이 반려되어 감사원을 통해 취득 ○ (법무공단) 유사한 판례를 발굴하여 본 사안에 적용(1.27) ○ (경기도)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추진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요 성과 (기대성과)</p>	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 padding: 10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◇ (대내적 성과) 무상귀속으로 인한 예산 절감(약 40억 원) 및 지체된 댐 사업 완료 고시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가능</p> <p>◇ (대외적 성과) 공공시설 무상귀속 분쟁 시 중요 선결례 활용 → 감사원 홈페이지 게시 및 적극행정 사례집 게재 예정</p> </div> <p>□ (대내)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(21.7.21)에 근거한 무상귀속 실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예산절감) 사전컨설팅 의견서에 따라 도로 3개 노선의 토지부분 약 80% 상당의 필지를 무상으로 취득 → 100% 무상귀속 시 약 55억 원* 이상의 예산절감 가능 <p>* (산정내역) 경기도 공유지(105천㎡)×토지보상 평균단가(약 52천원/㎡)= 55억 원</p>

- (공익 확보) 사업 준공에 따른 **댐 주변지원 사업비 집행 가능**
- 댐 사업 완료고시 후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(약 11억원/년) 집행을 통해 지역발전과 댐 주변지역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

[감사원 의견서] 도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관계없이 무상귀속 대상.

댐법 취지, 판례, 법제처 의견 등 고려 시 **무상귀속이 합리적이며**
국토계획법 등(35개)의 **입법 취지도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규정**

- (대외)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**무상귀속 협의 시 선결례 적용**
 - 최고 감사기관의 무상귀속 요건에 대한 법 적용 기준 제시로 전국 **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**하며 사회 형평성 제고에 기여
 - ☞ 택지·도시·공항 등 다양한 공익사업의 대체시설 설치 시 유상매입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 발생 중. 특히 택지분양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유상매수를 한 경우 조성원가에 반영 후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환수한 다음에 수분양자에게 그 상당액을 돌려주지 않음

- ◇ (난관①) 경기도의 조달청 기준 적용 ⇒ 환경부, 법무공단 협업
- ◇ (난관②) 법제처 유권해석 '반려' ⇒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 협업
- ◇ (난관③) 선례에 따른 업무처리 주장 ⇒ 지속적인 협의, 설득

**실무상
어려움과
해결 노력**

- (정부 기준) 조달청 내부기준에 근거한 경기도의 유상매입 고수
 - (쟁점) 잘못된 정부기준을 근거로 종래 공공시설이었던 도로의 유상매입 요구 및 소송에 의한 소극적 문제 해결 권유(경기도)
 - (해결노력)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*(21.1) 의뢰 후 **환경부와 공동으로 경기도를 방문**하여 협의하는 등 원만한 해결 노력 추진
 - * (법무공단) 종래 공공시설이었던 도로부지 전 필지에 대해 무상귀속 의견
- (공문 반려)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법제처에서 반려
 - (쟁점) 환경부를 통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 공문 반려
→ 댐법상 도로범위 불명확, 무상귀속 범위는 소관부서 자체판단 사항(21.4.30)
 - (해결노력)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법제처의 공식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전략 수정
- (과거 선례) 경기도는 유상매수 전례를 근거로 유상매입 요청
 - (쟁점) 대체도로 공사 당시('14년~'16년) 종래 공공시설(도로, 16 필지, 3.2억)을 유상매입한 전례에 따라 처리하자는 주장(경기도)
 - (해결노력) 과거의 유상매입 업무처리는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명백히 잘못된 업무처리였음을 경기도 담당부서에 설득